

보도자료

2014. 12. 17.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사법지원실
담당자	사법지원심의관 이진웅(☎02-3480-1368)
공보관실 ☎ 3480-1451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건의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2014. 12. 17.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대법원 4층 404호 회의실)하고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건의**
 -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2014. 12. 17. 16:30 ~ 18:00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
 - 위원회는 지난 2014. 4. 22. 제2차 정기회의 이후 변화된 법원의 도산실무에 관한 **보고안건**, 회생·파산법관의 전문화 현황과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한 **심의안건**을 논의
 - 위원회는 회생·파산법관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한 **의결안건**에 관하여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건의를 의결**
- **도산전문법관 제도는 법관이 전문 분야인 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동일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전문법관제도**
 - 위원회의 2014. 4. 22. 제2차 정기회에서의 도산전문법원 설치 건의 이후에 전문법원의 도입뿐만 아니라 전문법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급증
 - 현재 법관이 한 법원의 회생·파산사건 재판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3년
 - 도산전문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회생·파산사건을 전**

담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 전문성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도산전문법관이 **순환근무**를 통해 서울과 지방의 각 지방법원에서 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하게 할 경우 **각 법원별 전문성, 업무처리 기준의 편차가 감소**하고 회생·파산 사건 처리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임
- **대법원은 도산전문법원 설립 추진과 함께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동시에 검토** 할 것임

□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건의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급증, 기업의 구조조정 상시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회생·파산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
 - **법인회생** : 2007년 연간 접수건수 **116건** ⇒ 2013년 연간 접수건수 **835건**
 - **법인파산** : 2007년 연간 접수건수 **132건** ⇒ 2013년 연간 접수건수 **461건**
 - **개인회생** : 2007년 연간 접수건수 **56,124건** ⇒ 2013년 연간 접수건수 **105,885건**
-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법원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도산전문법원 설치 논의
 - 2014. 1. 22.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파산법원 설치 건의**
 - 2014. 4. 22.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도산전문법원 설치 건의**
 - 2014. 7. 14. 도산법연구회, 한국도산법학회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 개최**
- 도산전문법원의 설치 논의는 법원의 조직, 구성 관점에서의 도산절차 전문화 시도 ⇨ 도산절차 전문화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회생·파산법관 전문화 현황

- **전국 9개 지방법원에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설치**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 ▶ 일정 정도의 업무량(부장판사 포함 4~5명 이상의 판사가 관여할 정도)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와 유사한 형태의 통합재판부를 설치하여 도산사건(법인, 개인 포함) 전부를 맡아 처리함
- ▶ 수석부와 파산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파산부를 설치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파산부장으로 보임함(법원의 여건에 따라 법인회생 사건 중 부채액 일정 규모 이상의 사건은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배석을 맡는 방식도 가능)
- ▶ 수개의 파산부 설치를 전제로 단독 경력의 법관이 법인사건의 배석업무와 개인사건의 단독업무를 적절히 겸하거나 나누어 처리하되(다양한 조합 가능), 2년 이상의 사무분담기간을 보장하여 1년차에 개인사건만 담당할 판사는 2년차에는 법인사건과 개인사건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1년차에 개인사건만 담당하더라도 파산부에 근무하는 동안 최소 1년 이상은 법인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는 예측가능성 부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 1999. 2.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설치
- 수원지방법원 : 2012. 2.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설치
- 의정부,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창원, 광주지방법원 : 2013. 2.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설치
- 효과
 - 도산담당 법관으로 하여금 도산업무만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원 내부적으로 도산절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도산담당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
 - 실제 통계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파산부가 설치된 법원이 파산부가 설치되지 않은 법원에 비해 도산사건의 접수 및 처리, 소요기간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법관연수, 세미나,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등 개최

□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건의에 대한 평가

- 현재 법관이 한 법원의 회생·파산사건 재판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3년에 불과한데 도산전문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법원에서 회생·파산사건을 전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법관 전문성의 획기적인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도산전문법관이 순환근무를 통해 서울과 지방의 각 지방법원에서 회생·파산사건

을 처리하게 할 경우 각 법원별 전문성, 업무처리 기준의 편차가 감소하고 회생·파산사건 처리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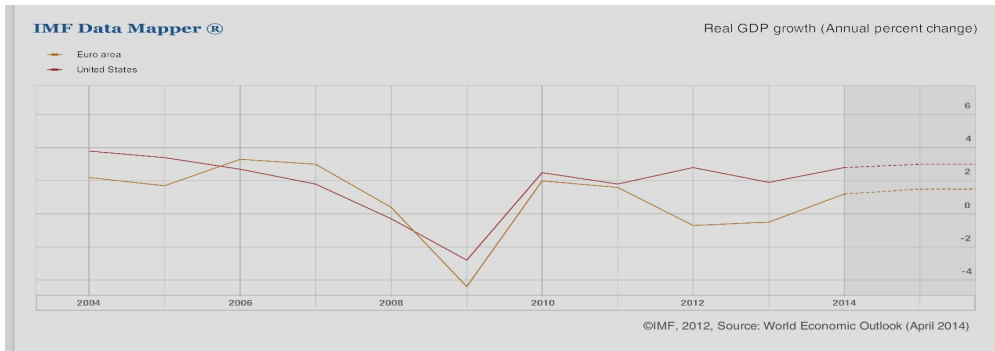
- 도산전문법관 제도의 도입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절차의 진행을 통해 법인이거나 개인이 과중한 부채로부터 신속히 해방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회복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도산전문법원 설립과 함께 도산전문법관 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원과 법관 모두의 전문화가 완성됨으로써 전문성 제고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임

□ 도산전문법원, 도산전문법관의 사회적 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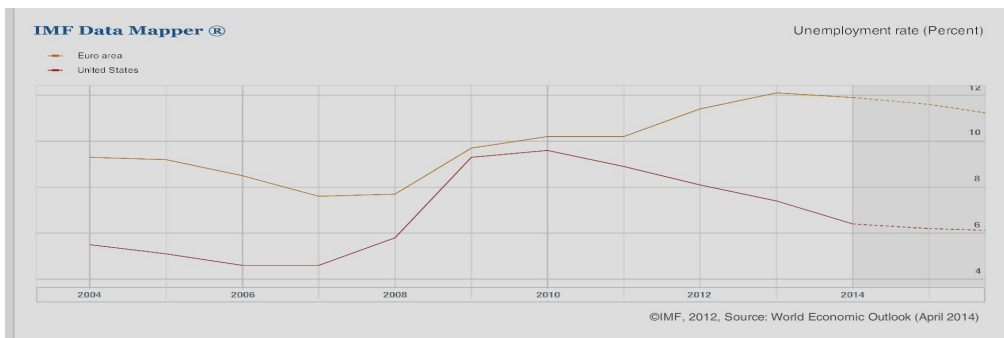
-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절차 진행을 통한 경제 회복 촉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호황을 구가하는 반면 유로존은 일부 국가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등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미국과 유럽의 실질GDP성장률 비교>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 비교>



- 유럽 정책연구소 소장 Daniel Gros

- 미국과 유럽이 금융위기 극복에 차이를 보인 가장 주요한 원인을 미국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절차에서 찾고 있음(Daniel Gros, *The Transatlantic Growth Gap*, Project Syndicate(July 21, 2014),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daniel-gros-attributes-america-s-edge-over-europe-to-its-faster-bankruptcy-procedures>)
-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국가에서 소비자 도산절차는 5~7년이 소요되고,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해야만 면책이 가능함. 반면 미국에서는 1년 이내에 절차가 마쳐짐. 그는 미국 소비자는 과중한 부채로부터 신속히 해방됨으로써 새로이 시작할 수 있었고, 이것이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차이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유럽의 지도자들이 도산절차를 전문적으로 신속히 진행하는 데 관심을 두도록 촉구함

-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Stuart C. Gilson

- 미국 기업들은 잘 정비된 도산법제와 도산전문가들 덕분에 유럽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위기를 벗어나 경쟁력을 회복하였음(Stuart Gilson, *Coming Through in a Crisis: How Chapter 11 and the Debt Restructuring Industry are Helping to Revive the US Economy*,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A Morgan Stanley Publication(Fall 2012) 35쪽)

□ **향후 계획**

- 대법원은 회생·파산법관 전문성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임 ⇨ 도산전문법원 설립 추진과 함께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동시에 검토할 것임

□ **참고 :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제도**

- 개요

-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가정법원별로 선발되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법원에 근무하면서 가사소년사건을 전담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가사소년사건에 있어 전문성과 연륜을 갖춘 전문법관을 도입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2005년부터 도입

○ 근무기간

- 4~6년 동안 한 가정법원에서 계속 근무

○ 인사상의 특칙

-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 및 직무상 해외출장 등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음

회생·파산위원회 개요

가. 개요

1) 설치배경

- (가) 통합도산법 제정 및 시행(2006. 4.) 이후 도산사건의 안정적 증가와 세계 경제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도 공정·신속한 처리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나) 이러한 때에 바람직한 도산실무를 정립하고, 도산절차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관여하는 도산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를 대변하는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도산사건의 전문적 처리는 물론 도산절차 운용실무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음

2) 설치근거

- (1)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3. 10. 11. 제정·시행)

3) 위원회 개요

- (1)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회생·파산위원회를 법원행정처에 설치함

(2) 설치근거

(가)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13. 10. 11. 제정·시행

(3) 업무

(가) 위원회는 ① 회생·파산절차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② 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③ 관리위원, 관리인 등 후보자 선임 및 위촉 기준과 절차, ④ 관리위원, 관리인 등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 회생·파산절차의 체계적·통일적 운용을 위한 자문의견 제시를 주된 업무로 함

(4)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행정기관 공무원, 금융전문가, 학식경험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지명(위원장, 주무위원)함

(5) 회의

(가)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마다(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마다 개최함